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방법 개편 등〉

■ 유동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415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혜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유동수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 10.
3. 회 부 일 : 2025. 1.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통지 발송 업무를 대행하는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주주명부상 정보가 주주의 성명과 주소로 한정되는 점과 전자문서로 통지하기 위해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적 어려움 때문에 현재 국내 명의개서 대행 기관 중 전자통지 제도를 활용하는 곳은 없으며, 이에 따라 종이 통지서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행정력 낭비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제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자 금융 거래와 전자 의사소통을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고, 서면 통지는 종이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ESG 경영기조에 역행하는 활동이므

로 특별한 조건 없이 주주총회 소집통지 등을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주주명부에 주주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각 주주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게 하는 등 서면 통지를 줄이고 전자 통지를 보편화하려는 것임(안 제363조 등).

Ⅲ. 검토의견

1. 주주명부 기재사항에 “연락처” 포함(안 제352조제1항 등)

□ 현행법은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한 때는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주주 등에 대한 회사의 통지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로 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제352조제1항 각 호 및 제353조제1항 등¹⁾).

○ 이와 같이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등으로 회사가 주주에 대한 통지·최고를 하는 경우, 회사가 발송한 해당 통지·최고는 실제 도달 여부와는 상관없이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는 면책적 효과가 부여됨(제353조제2항·제304조제2항²⁾)

□ 개정안은 주주명부 기재사항에 주주의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와 같은 “연락처”를 포함하고, 이와 연관된 주주명부의 효력 및 전자주주명부 관련 규정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안의 다른 개

1) 「상법」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①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주식의 취득연월일

제353조(주주명부의 효력) ①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료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② 제30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

2) 「상법」 제304조(주식인수인 등에 대한 통지, 최고) ① 주식인수인 또는 주식청약인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주식인수증 또는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료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②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정사항(주주총회 소집 통지방법 개편³⁾)이 수용되는 경우 함께 정비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안 제352조제1항제1호 등).

현행	개정안
第352條(株主名簿의 記載事項) ① 주식을 發行한 때에는 株主名簿에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株主의 姓名과 住所 2. 3. (생략) ② (생략) 제352조의2(전자주주명부) ① (생략) ② 전자주주명부에는 제352조 제1항의 기재사항 외에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 ③ (생략) 第353條(株主名簿의 效力) ① 株主 또는 質權者에 對한 會社의 通知 또는 催告는 株主名簿에 記載한 住所 또는 그 者로부터	第352條(株主名簿의 記載事項) ① ----- ----- -----.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52조의2(전자주주명부) ① (현행과 같음) <삭제> ③ (현행과 같음) 第353條(株主名簿의 效力) ① --- ----- ----- -----주소 또는 연락처나-----

3) 제안이유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개정 사항 중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으로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포함)를 추가하는 것은, 회사가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이후 해당 전자우편주소로 해당 주주의 동의 없이도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발송할 수 있게 하는 다른 개정 내용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현행	개정안
會社에 通知한 <u>住所</u>로 하면 된다. ② (생략)	-----<u>주소</u> <u>또는 연락처</u>-----. ② (현행과 같음)

2.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주주 동의 요건 삭제(안 제363조제1항)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현행법은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문서로 발송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발송하는 경우와는 달리 각 주주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제363조제1항 등4).5)

○ 주주의 동의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동의는 사전에 받아야 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전자통지를 한 경우 추후 주주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실무상 회사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려면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른 공인전자서명6)에 기초하여 그 성립

4)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별도의 소집통지 특례를 두고 있음.

「상법」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①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상법 시행령」 제31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 ① 법 제542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이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말한다.

② 상장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542조의4제1항의 공고를 할 수 있다.

6)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의 진정성이 담보된 전자문서를 회사에 보관하고 그 사본을 주주들에게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회사로서는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한 서면통지 및 전자통지를 병행하여야 하므로 전자통지를 도입할 유인이 적다는 평가가 있음.

□ 개정안은 회사가 각 주주의 동의 없이도 전자문서를 통한 주주명부 소집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해당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서면 통지에 따른 비용 등을 절감하고 전자적 방식에 의한 통지를 보편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안 제36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u>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u>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u>주소</u> 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 ----- ----- <u>서면</u> <u>또는</u> ----- ----- ----- <u>주소 및 연</u> <u>락처</u> ----- ----- ----- -----.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현행	개정안
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u>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u>	③ ----- ----- ----- ----- ----- <u>서면 또는</u> ----- -----.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나. 구체적 검토

□ 주주총회 소집 통지방법에 관한 제363조제1항이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시 각 주주의 동의를 별도로 요구하게 된 것은 2009. 5. 28. 법률 제9746호로 일부개정된 이후이며, 이전⁷⁾에는 전자문서의 통지 또한 서면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추가 요건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

○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중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회사법상의 행위(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및 주주총회 소집 청구 등⁸⁾) 중

7) 「상법」(2009. 5. 28. 법률 제97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第363條(召集의 通知, 公告) ① 總會를 召集함에는 會日을 定하여 2週間前에 各株主에 對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通知를 發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株主名簿상의 株主의 住所에 계속 3年間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會社는 當해 株主에게 總會의 召集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①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

이러한 추가 요건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해당 규정이 유일함.⁹⁾

□ 개별 주주의 사전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회사가 전자문서를 통하여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①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¹⁰⁾ 등 주주총회 운영의 전자화를 통하여

주총회의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株主提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9) 한편, 일본 회사법 제299조제4항은 현행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일본 회사법」(법무부, “일본 회사법”, 2025.)

제299조(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하려는 이사는 주주총회의 2주(전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정한 때를 제외하고 공개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주일(그 주식회사가 이사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회사로서 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전까지 주주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 전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전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정한 경우

2. 주식회사가 이사회설치회사인 경우

③ 이사는 전항의 서면에 의한 통지의 발송에 갈음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승낙을 얻어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사는 동항의 서면에 의한 통지를 발송한 것으로 본다.

10) 「상법」(법률 제20991호, 2027. 1. 1. 시행 예정)

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 ①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등은 제364조에 따른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363조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에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자통신수단,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2조의15(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① 상장회사가 제542조의14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가 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및 그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상장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주주의 참여도를 제고하려는 최근 입법 경향에 부합한다는 점, ②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회사법상의 행위와 관련된 다른 규정과의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입법조치로 보임.

○ 한편,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회사가 발송하기만 하면 되고 주주에게 도달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개정안에 따라 전자문서 소집통지가 일반화되는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점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¹¹⁾에 따라 회사가 “해당 전자문서를 송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송한 때”가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유효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주주총회의 절차적 정당성 요건이라는 점¹²⁾에서, 각 주주가 주주명부에 자신의 연락처 중 전자우편주소(계정)를 장기간 현행화하지 않게 되면 사용하지 아니하는 계정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발송되기만 하고 개별 주주들이 확인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

⑤ 상장회사는 제4항에 따른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주주의 질의 방법 및 절차, 의장의 의사진행 등 전자주주총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송신·수신의 시기 및 장소) ① 전자문서는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전자문서를 송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송한 때 송신된 것으로 본다.

12) 다만, 판례는 일반적으로 소집통지의 하자가 경미한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중대한 경우에는 부존재사유로 봄.

우 정기적인 연락처 현행화 방법을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¹³⁾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고려¹⁴⁾하여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55

13) 상장회사의 상법상 주주명부에는 예탁주식 전부에 대하여 예탁결제원이 주주로 등재되고 실질주주의 성명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는 예탁주식 등을 이용하는 회사(상장회사 등)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예탁증권등 중 주식의 공유자(“실질주주”)의 명부인 실질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있음.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 ① 제315조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회사는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의 기재는 주주명부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4) 주주명부에 기재된 전자우편주소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된 판결(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35841 판결)은 실질주주가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 실질주주의 성명 및 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 및 수와 같이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되고, 이러한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가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나, 주주명부 기재사항이 아닌 실질주주의 전자우편주소도 열람·등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